

위원회설치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 행정의 중요사항을 예비 심의하여,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각 위원회는 위원회규정에서 규정하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3조(설치) ①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부서장은 위원회의 목적 및 구성(위원수, 임기 포함), 위원장의 직무, 소관부서, 회의소집과 의결, 회의록, 비밀엄수의 의무, 시행규칙 등이 포함된 위원회 규정을 입안하여 기획조정처에 규정 제정을 요청한다.<개정 2017.09.25>

② 기획조정처장은 위원회 설치의 타당성을 검토, 총장의 제가를 받아 관계 부서에 통보한다.<개정 2017.09.25>

③ 관계 부서는 규정에 의거 위원회를 구성하고, 구성내용을 기획조정처에 통보한다.<개정 2017.09.25>

④ 교무 및 학사관련 주요위원회는 위원 중 3분의1을 교수회에서 추천한자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<신설 2015.1.13>

제4조(규정) 각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, 그 규정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.

제5조(승인)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규정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는 날로부터 설치된 것으로 본다.

제6조(소집과 의결) ①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각 위원회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참석위원 2인 이상 서명 날인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시행) 각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얻은 후 시행한다.

제9조(사무) 각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어 사무를 처리케 하고, 간사는 교수 또는 사무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
제10조(현황관리) ①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해당부서에서는 위원명단을 즉시 기획조정처에 통보해야 하며, 위원의 변경이 있거나 위원회의 해산 등의 경우에도 같다.<개정 2017.09.25>

② 기획조정처장은 본교의 위원회현황을 작성·유지하여야 한다.<조신설 2015.1.13.><개정 2017. 09. 25>

부 칙(2001. 1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3. 10. 6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9. 2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2. 12. 2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-1-0-4 위원회설치규정

부 칙(2015. 1. 13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5. 10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9. 25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